

의 정 부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건물인도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효동

피 고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 [redacted]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[redacted] 임야 460㎡ 지상 별지 도면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 부분 벽돌조 주택 60㎡에서 퇴거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